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23. 1. 11.(수) 10:01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한상혁 위 원 장
안형환 부위원장
김 현 상임위원
김효재 상임위원 (4인)

- 불참위원 : 김창룡 상임위원 (1인)

제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0시 01분 개회 】

1. 성원보고

- 한상혁 위원장
 - 성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좌미애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다섯 분 중 네 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좌미애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한상혁 위원장
 - 2023년도 제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전차 회의록 확인

- 한상혁 위원장
 - 2022년도 제67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보고안전>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전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전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6. 보고사항

가.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 **한상혁 위원장**

- <보고안전 가> “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윤정 인터넷이용자정책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고 이유입니다. 등기우편을 대신해 각종 고지서나 통지 사항을 모바일로 전달하는 서비스인 ‘모바일 전자고지’는 「정보통신융합법」 제37조에 따른 과기부 임시허가를 통해 '19년 2월부터 국민들에게 제공되어 오고 있습니다. 동 서비스를 위해서는 모바일 고지 등을 원하는 이용기관이 보유한 주민번호를 본인확인기관이 연계 정보를 일괄변환해야 하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여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임시 허가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법 동조에 따라 임시허가 유효기간은 최대 4년이며, 관계기관의 장은 임시허가 유효기간 만료 전에 허가 근거법령을 정비해야 합니다. 이에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모바일전자고지의 서비스 근거, 승인절차 등 서비스 유지를 위한 사항을 명시하기 위함입니다. 추진 경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본인확인기관의 연계정보 제공 기준 변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본인확인기관은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이 완료되면 본인확인을 요청한 온라인 사업자에게 이용자에 대한 식별 등 목적으로 연계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본인확인기관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와 같이 본인확인서비스를 거치지 아니하면 연계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이를 개정하여 모바일전자고지 등 이용자의 주민번호를 CI로 일괄변환하는 것이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방통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본인확인기관이 본인확인서비스 없이도 주민정보를 연계정보로 변환하여 제3자에게 제공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방통위의 연계정보처리서비스 승인 규정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연계정보처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방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세부절차를 아래와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연계정보처리서비스 사업자와 본인확인기관이 함께 승인을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별표 7]에 따른 심사항목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심사위원회는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위원과 동일한 자격 보유자를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거짓·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거나 [별표 7] 심사항목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시 재검토 기한 등 기준 시점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6조 고시 재검토 기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시 재검토 기준일을 기존 '2021년 8월 1일'에서 법제처 요청에 따라 상반기 개정 시 2023년 7월 1일로 변경해 달라고 하여 이에 맞추어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제17조 규제의 재검토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고시 타당성 검토 시점을 기존 '2021년 8월 1일'로 되어 있었으나 국조실 규개위 요청에 따라 타당성 검토 기준일을 최초 개정 연도의 8월 1일로 변경 요구하여 '2015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참고 사항입니다. 본 고시 개정과는 별도로 CI 정의, CI 일괄변환 처리 근거, CI 안전조치 의무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하여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월까지 행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규제심사를 마치고 2월 중에 본 안전에 대해서 위원회 의결 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없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원안대로 접수하자는 의견이십니까?

○ **김효재 상임위원**

- 예.

○ **김 현 상임위원**

- 원안에 동의합니다.

○ **안형환 부위원장**

-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위원님들 모두 원안대로 접수하자는 의견에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전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되었습니다.

7. 기 타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마치겠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기 회의는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오늘 첫 회의입니다. 새해도 참석하신 모든 분들 원하시는 일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고, 그리고 많은 어려움이 현재화되어 있고 또 앞으로도 예상되는 시점이지만 저희들이 위원회가 해야 할 일들을 묵묵히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 우리가 항상 이야기해 왔던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규제 제도의 정비 그리고 국민 불편 해소 노력을 잠시라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해나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폐 회

○ 한상혁 위원장

- 이상으로 2023년도 제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0시 07분 폐회 】